

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

- 성명:
- 생년월일:
- 어구보증금 환급여부:
- 분실한 어구·부표 현황(수량 및 어구보증금):
- 환급금액:

「수산업법」 제81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4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여부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직인